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0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서천호 · 김성원
김선교 · 김승수 · 이종배
김대식 · 강명구 · 조은희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·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,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,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유럽연합·미국·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‘지속가능항공유(SAF) 혼합·공급 의무화제도’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,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또한,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,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3 신설 등).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“지속가능항공유”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장에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3(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·운영 등) ①

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촉진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그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의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1의2. “지속가능항공유”란 <u>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항공기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u>
12. ~ 15. (생 략) 제32조(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의 등록 등)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2. ~ 15. (현행과 같음) 제32조(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의 등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탄소중립화를 위</u>

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<u>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37조의3(지속가능항공유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·운영 등)</u>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촉진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그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의 원료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수거되는 바이오원료 등의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--	--